## 건축기획

- 건축기획 업무 수행방식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음
- 근거: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

### 대상

| 구분 | 기관 | 사업 |
|---|---|---|
| 대상 | 경기도 |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공공건축 |
| | 도내 시·군 | |
| 혜택 |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 업무 추진한 사업은 사전검토 대상에서 면제,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3조 | |

### 수행방식

- **건축기획 컨설팅** 신청기관, 민간전문가, 센터 상호 협업방식
  **(신청기관)** 건축기획 용역사 선정 및 용역관리, 자체예산 집행
  **(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)** 건축기획 현장조사·착수·중간·최종 단계별 컨설팅

### 신청 및 선정

- **신청시기** 건축기획 준비단계**용역사 선정 전**
- **신청방법** 매년 2월 수요조사, 공문신청**경기도 택지개발과**
- **신청선정**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검토·선정

## 공공건설·건축 자문

### 목적

- 합리적인 계획방향 설정 및 적정한 예산계획 수립
- 사업 관리·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품질 제고

### 자문내용

- 공공건설·건축의 발주, 기획 및 관리, 디자인 관리방안
- 에너지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, 유지·관리방안 등

### 자문응답 절차

자문신청 > 현장방문 (필요시) > 자문회의 개최 > 결과통지

##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

### 목적

- 공공건설·건축 관련 정책 및 제도 소개
- 공공건설·건축 사업 추진 절차 이해 증진
- 발주기관 사업 역량 강화

### 대상

- 공공건설·건축 사업 담당자**발주기관, 설계자**

### 내용

- 공공건설·건축 관련 법제도
- 공공건설·건축 기획업무
- 공공건설·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
- 공공건설·건축 사업 발주방식

## 찾아가는 교육

### 목적

공공건축 사업 발주부서가 복지, 문화, 체육, 연구 등 공공서비스 관련 부서로 다양화 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 필요

### 대상

공공건설·건축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기관**시·군, 공공기관**의 실무자

### 내용

사전검토 신청서 작성법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준과 정보 제공

## 데이터베이스 구축

### 목적

- 경기도 공공건설·건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
- 구축된 DB 제공을 통해 관련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

### 주요 데이터베이스

- 센터에서 수행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DB
- 사전검토 이후의 설계, 시공, 유지관리 DB
- 우수 공공건설·건축 및 우수 기획·계획 사례 등

## 자주하는 질문 FAQ

### 공공건설

**Q1 사전검토 '소요기간'은 얼마나 되나요?**
사전검토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(법정 공휴일 제외)입니다.

**Q2 사전검토 접수는 언제 받나요?**
사전검토 접수는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.

**Q3 사전검토 '신청방법'은 어떻게 해야되나요?**
사전검토 신청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시어 '경기주택도시공사**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**'로 전자공문 신청하시면 됩니다.

**Q4 사전검토 '신청시기'는 언제인가요?**
사전검토 신청은 '설계용역 입찰공고 전'에 하셔야 합니다.

### 공공건축

**Q1 사전검토 '신청시기'는 언제인가요?**
사전검토 신청은 '설계용역 입찰공고 전'에 신청하셔야 하며, 설계용역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사전검토 신청·접수가 불가합니다.

**Q2 사전검토 '신청방법'은 어떻게 되나요?**
사전검토 신청은 관련 서식을 작성하시어 '경기주택도시공사**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**'로 전자공문 신청하시면 됩니다.

**Q3 사전검토 접수는 언제 받나요?**
사전검토 접수일 기준은 매월 첫째주, 셋째주 화요일입니다. 접수는 수시로 받고 있으나, 접수일 기준은 첫째주, 셋째주 화요일로 산정됩니다. 한편, 12월은 운영실태 결산 등을 위하여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

**Q4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 샘플이 있을까요?**
타 공공기관의 사전검토 신청서는 외부 공개가 불가합니다.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의 발간물 카테고리 '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'가 게시되어 있으니 작성 시 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
**Q5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?**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시행령 제19조의4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조성 절차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.

## 오시는 길

**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**(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)
(16514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,
광교SK뷰레이크타워 A동 2808호

**지하철 이용 시**
-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하차 4번 출구 도보 15분
- 신분당선 상현역 하차 2번 출구 도보 20분

**버스 이용 시**
- 광교센트럴뷰 하차
  간선 11, 19, 20, 20-1, 20-2 등


**Tel**
건축분야 031-212-5212, 5213, 5214
토목·조경·환경 분야 031-212-5218

**Homepage**
www.gg.go.kr/gpcc


GYEONGGI
HOUSING
URBAN
DEVELOPMENT
CORPORATION

#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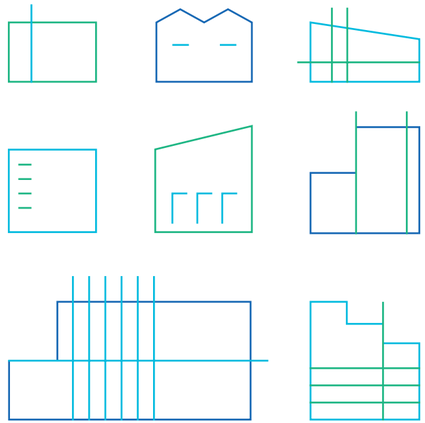

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
(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)
경기주택도시공사

# 센터 소개

###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

경기도는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
「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였으며,
공공건설 기획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
2019년 12월 **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**를 설치하였습니다.

- 「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」 제9조

###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

2021년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에 따른
지역 **공공건축지원센터** 승인을 받아 경기도 및 도내 시·군
등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-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4조의2

### 주요 수행업무

「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조례」와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에
따라 다음의 법정업무를 수행합니다.

- 공공건설·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
- 건축기획 및 자문
- 공공기관 관련 교육
- 공공건설·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

### 연혁

- **2019.6** 「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」
- **2019.12** 센터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GH / 센터 개소
- **2021.7** 경기도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승인 국토교통부
  *공공건설지원센터 내 기능 추가
- **2022.1** 센터 홈페이지 오픈 www.gg.go.kr/gpcc
- **2024.1** 건축기획업무 신설

**운영기관** 경기주택도시공사 GH

# 사업계획 사전검토

### 목적

- 공공건설·건축 사업기획의 전문성 강화
- 공공건설·건축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
- 공공건설·건축 유지관리의 경제성 확보

### 주요내용

- 공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목표 설정
-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소요공간 계획
- 품질 품격 향상을 위한 디자인 관리방안
-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계획 등

### 신청 및 접수

| | |
|---|---|
| **신청시기** |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 |
| **신청방법** | 공문접수 **경기주택도시공사 ·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** |
| **접수(기준)일** | 공공건설 상시<br>공공건축 매월 첫째, 셋째주 화요일 **12월은 미접수** |
| **처리기간** | 접수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 **법정공휴일 제외** |
| **신청서류** | 사전검토 신청서, 사업계획서 외 관련자료<br>***신청서식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** |

**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**
www.gg.go.kr/gpcc

### 첨부목록표 *필수

- 투자심사 자료 및 예산승인 자료
- 문화재보존관리지도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(원)
- 부지 경계 및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**지적도, 수치지형도(CAD파일)**
- 기존 시설이 있을 경우: 건축물대장, 건축물 현황도
- 공사비 산출근거**조달청 공사비 분석자료, 예산편성 기준자료**

# 공공건설

### 근거 「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」 제7조

### 대상

| 구분 | 기관 | 사업 |
|---|---|---|
| **대상** | 경기도 | 공사비 1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<br>**건축, 토목, 조경, 환경시설 등** |
| |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| |
| | 도내 시·군 등 | 위 사업 중<br>경기도가 공사비의 50% 이상 보조하는 사업 |
| **면제** | ◆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사업<br>◆ 경기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복구사업<br>◆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검토 대상사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<br>◆ 전기공사**전기공사업법**, 문화재수리공사**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**,<br>소방시설공사**소방시설공사업법**, 정보통신공사**정보통신공사업법** | |

### 검토내용

- 【건축】 공공건축과 동일함
- 【토목 조경 환경 등】 지역 및 사업대상 현황, 설계용역 발주방식, **주요사업계획사업규모, 배치계획, 시설계획, 공공성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**, 예산, 향후일정, 사업관리체계, 시설 운영·활용 계획

**신청기관** **분야별 실적** '20년~'24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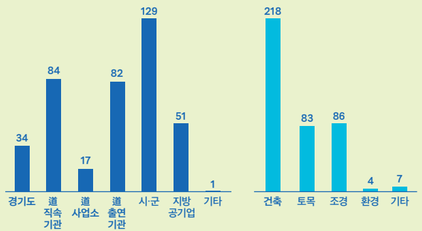


# 공공건축

### 근거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3조

### 대상

| 구분 | 기관 | 사업 |
|---|---|---|
| **대상** | 경기도<br>도내 시·군<br>지방공기업 | ◆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<br>◆ 설계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<br>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|
| **면제** | ◆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사업<br>◆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 사업<br>◆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 사업<br>◆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7-26, 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| |

### 검토내용

- 사업계획 지역 및 부지현황, 사업규모, 예산, 에너지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, 설계용역 발주방식, 사업추진 일정, 사업관리체계
- 건축계획 배치계획, 시설계획, 공공성 확보 등 지역활성화 기여방안, 시설 운영·활용 계획

**신청기관** **건축물 주용도** '21년~'24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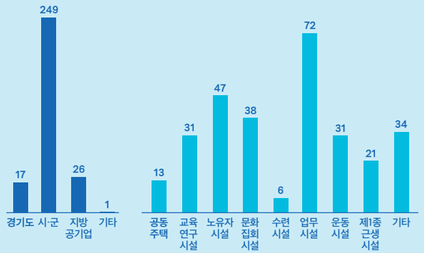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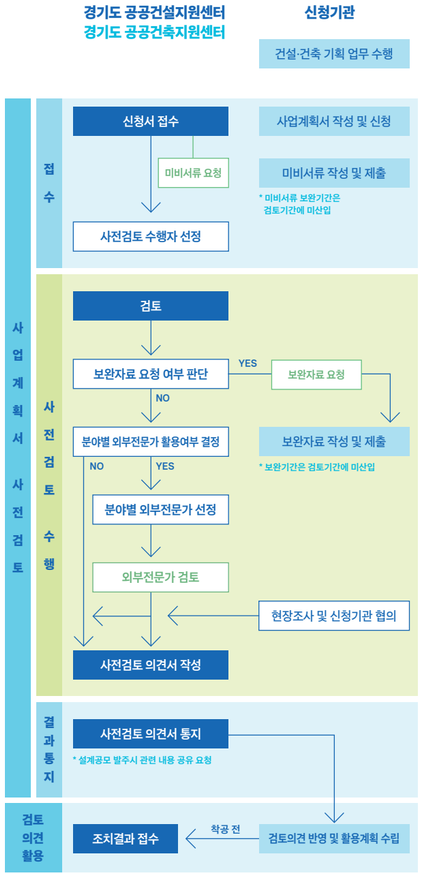
# 사전검토 수행절차